10. 심판의 장소 및 공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3조). 지정재판부의 결정이나 신청사건의 결정은 심판정에서 선고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정문(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한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는 대심판정과 소심판정이 있는데, 대심판정은 전원 재판부의 변론, 종국결정의 선고 등의 경우에 사용하고, 소심판정은 수명재 판관에 의한 준비절차, 증거조사(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2항) 또는 지정재판부의 증거조사(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등에 사용된다.